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직인상

전화 031-475-4290 / 팩스 031-481-4555

보도자료

2022. 12. 2.(금)

제 목

취약계층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받아내어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9명(1명 구속)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허성환)는 성폭력 송치 사건 수사 중, 불법 대부업체의 단서를 발견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함
-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 538명 상대로 대출원리금 10억 원 이상을 수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, 법정 최고이율 연 20%를 초과하여 총 1억 원 이상의 초과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,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함
- 피고인들은 대포통장, 대포폰을 구입 및 사용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바, 그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로도 기소함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: A(29세, 대표, 구속) 및 직원 8명(B, C, D, E, F, G, H, I)
- 공소사실 요지 :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원리금 10억 원 이상 수취하여 대부업 영위하고, 차명계좌로 초과이자 1억 원 이상을 받는 등 [대부업법 위반, 범죄수익은닉법위반, 전기통신사업법위반, 전자금융거래법위반]

※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와 같음

2

수사 경과

- '22. 7. 성폭력사건* 수사 중 실업주 A의 대부업법위반 혐의 포착
* 대부업체 직원이 여성 채무자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·추심한 사건
- '22. 7. ~11. A의 사무실·주거지 압수수색** 및 계좌·통신내역 분석, 포렌식 의뢰 및 결과 분석, 출장 조사 등 직접수사 진행
공범 B 등 8명 추가 인지
** 현금 4,604만 원, 휴대폰 2대 등 압수, A의 증거인멸 사실 확인
- '22. 11. 15. A 구속영장 발부 (11. 9. 구속영장 청구)
- '22. 11. 30. A 구속 기소, B 등 8명 불구속 기소

3

범행 수법

- 일부 중소도시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 후 전국 각지에서 불법 영업
 - A는 일부 지자체에서 대부업 실태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, 허위 증빙서류로 중복 소재 중소도시에 대부업 등록
 - 이후 대출중개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서울, 경기, 충남, 경북,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
 - ※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'금융위원회'에 대부업 등록 필요
 - A는 공범들에게 팀장, 실장 등의 직함을 부여하고, 실장들 명의로도 허위로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 개의 대부업체 명의를 확보한 뒤 광고 및 영업을 확장함
- 법정이율 이내라고 광고한 후 상담 과정에서 조건을 변경
 - 대출광고에는 법정이율 연 20%를 준수한다고 기재한 뒤, 대출신청자가 상담을 위해 전화하면 상담 과정에서 '고객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,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'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건을 변경
 - 특히 변제기일을 1주 후로 지정하고 선이자 공제 등 수법으로 이자를 변경함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연 이율 1,091~5,214%에 이르는 고금리 이자를 약탈적으로 수취
 - 기일 내 변제가 어려울 경우 매주 '연장비' 명목의 추가 이자를 징수

○ 추심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자행

- 본건의 수사단서는 공범 중 한 명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및 추심을 한 성폭력 사건이었음
- 대출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의 가족, 직장에 대한 연락처를 요구하고, 미상환시 가족, 직장 등에 연락하거나 향후 연락하겠다는 점을 암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추심 행위

주요 피해 사례

- #1. 성남 거주 40대 여성 상대, 원금 95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14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였으나(연 2,469%), 실제로는 8개월 간 연장비 포함 1,200만 원을 추심
- #2. 경북 의성 거주 10대 여성을 포함하여, 178명의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연 1,091~5,214%의 고금리 이자 추심
- #3. 평택 거주 외국인 여성 상대, 원금 45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8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였으나(연 4,055%), 기한 내 변제받지 못하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5개월 간 연장비 포함 380만 원을 추심
- #4. 대전 거주 30대 남성 상대, 원금 35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6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였으나(연 3,724%), 기한 내 변제받지 못하자 상담 시 확보한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연락, 식당 운영 중인 채무자의 모친을 찾아가 추심 등 다수

4 수사 의의

- 본건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, 외국인이나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이율 1,091~5,214%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수취하여 폭리를 취한 **약탈적 불법 사금융** 범행에 해당함
- A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업체의 운영 기간, 규모, 조직 등을 적극 수사하여,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 A를 직구속하여 기소하고 직원 8명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**민생침해사범을 엄단**하고, **개정된 범죄수익은닉법**에 따라 **범죄수익의 취득 가장행위를 적극 처벌**함
- 검찰은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대처하고,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☑

[별지]

순번	피고인	역할	공소사실 요지	처리 결과
1	A (29세)	대표 (총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. 5.~'22. 6. 10억 이상 규모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정 최고이율 초과하여 1억 8,000만 원 이상 수취 [대부업법위반, 범죄수익은닉법위반] ▶ '21. 5.~'22. 4. 대포폰 9개 구매, 차명계좌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 [전기통신사업법위반, 전자금융거래법위반] 	구속 기소
2	B (29세)	실장 (출동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. 5.~'22. 6.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정 최고이율 초과하여 1억 8,000만 원 이상 수취 [대부업법위반, 범죄수익은닉법위반] ※ B의 미등록 대부업은 별건(성폭력사건)과 함께 먼저 기소 	불구속 기소
3	C (29세)	팀장 (콜직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. 5.~'22. 6. 10억 이상 규모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정 최고이율 초과하여 1억 8,000만 원 이상 수취 [대부업법위반, 범죄수익은닉법위반] 	불구속 기소
4	D (27세)	경상도 팀장 (콜직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. 5.~'22. 6. 10억 이상 규모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법정 최고이율 초과하여 1억 8,000만 원 이상 수취 [대부업법위반] 	불구속 기소
5	E (29세) F (28세) G (26세) H (27세)	실장 (출동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. 5.~'22. 6. 10억 이상 규모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정 최고이율 초과하여 1억 8,000만 원 이상 수취 [대부업법위반, 범죄수익은닉법위반] 	불구속 기소
6	I (29세)	실장 (출동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. 5.~'22. 6. 10억 이상 규모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면서 법정 최고이율 초과하여 1억 8,000만 원 이상 수취 [대부업법위반] 	불구속 기소